

# 에덴개혁장로교회 정관

## TABLE OF CONTENTS

|                           |   |
|---------------------------|---|
| 제 1 장 총칙 .....            | 1 |
| 제 1 조 명칭 .....            | 1 |
| 제 2 조 목적 .....            | 1 |
| 제 3 조 표준 .....            | 1 |
| 제 4 조 실천 강령 .....         | 1 |
| 제 2 장 교인 .....            | 1 |
| 제 1 조 교인의 구분 .....        | 1 |
| 제 2 조 등록교인의 자격 .....      | 1 |
| 제 3 조 등록의 종료 .....        | 2 |
| 제 4 조 교인의 의무 .....        | 2 |
| 제 5 조 교인의 권리 .....        | 2 |
| 제 3 장 직분자와 각종 회 .....     | 3 |
| 제 1 조 당회 .....            | 3 |
| 제 1 항 목적과 구성 .....        | 3 |
| 제 2 항 공동직무 .....          | 3 |
| 제 3 항 장로의 개별직무 .....      | 3 |
| 제 4 항 선출과 임기 .....        | 3 |
| 제 5 항 임원 조직 .....         | 4 |
| 제 6 항 회의 .....            | 4 |
| 제 7 항 각종 기록과 서류의 보관 ..... | 4 |
| 제 8 항 담임 목사에 대한 의무 .....  | 4 |
| 제 9 항 보조사역자와 선교사 .....    | 5 |
| 제 2 조 집사회 .....           | 5 |
| 제 1 항 목적과 구성 .....        | 5 |
| 제 2 항 직무 .....            | 5 |
| 제 3 항 선출과 임기 .....        | 5 |

|                           |    |
|---------------------------|----|
| 제 4 항 임원 조직 .....         | 6  |
| 제 5 항 회의 .....            | 6  |
| 제 6 항 각종 기록과 서류의 보관 ..... | 6  |
| 제 3 조 이사회.....            | 6  |
| 제 1 항 목적과 구성.....         | 6  |
| 제 2 항 직무 .....            | 7  |
| 제 3 항 선출과 임기.....         | 7  |
| 제 4 항 임원 조직 .....         | 8  |
| 제 5 항 회의 .....            | 8  |
| 제 6 항 각종 기록과 서류의 보관 ..... | 8  |
| 제 4 장 각종 회의와 모임 .....     | 9  |
| 제 1 조 일반 규칙 .....         | 9  |
| 제 1 항 회의 전 공고.....        | 9  |
| 제 2 항 참관권.....            | 9  |
| 제 3 항 유효한 결정의 조건 .....    | 9  |
| 제 4 항 각 회의 서기의 의무 .....   | 9  |
| 제 2 조 공동 회의 .....         | 10 |
| 제 1 항 공동회원의 자격.....       | 10 |
| 제 2 항 정기회의 .....          | 10 |
| 제 3 항 임시회의 .....          | 10 |
| 제 4 항 임원 조직 .....         | 10 |
| 제 3 조 제직 회의 .....         | 10 |
| 제 4 조 법인 회의 .....         | 11 |
| 제 1 항 법인회원 자격 .....       | 11 |
| 제 2 항 정기회의 .....          | 11 |
| 제 3 항 임시회의 .....          | 11 |
| 제 4 항 임원 조직 .....         | 11 |

|                         |    |
|-------------------------|----|
| 제 5 항 정족수.....          | 11 |
| 제 5 장 위원회및 그룹의 조직 ..... | 12 |
| 제 1 조 위원회.....          | 12 |
| 제 2 조 그룹/클럽/친목회.....    | 12 |
| 제 6 장 권징 .....          | 12 |
| 제 1 조 권징의 본질.....       | 12 |
| 제 2 조 권징의 목적.....       | 12 |
| 제 3 조 권징의 과정.....       | 12 |
| 제 1 항 절차 .....          | 12 |
| 제 2 항 권면 .....          | 12 |
| 제 4 조 권징의 종류.....       | 13 |
| 제 5 조 해벌 .....          | 13 |
| 제 7 장 부칙 .....          | 13 |
| 제 1 조 회계년도와 사역년도 .....  | 13 |
| 제 2 조 준용 .....          | 13 |
| 제 3 조 수정 .....          | 13 |
| 제 4 조 발효 .....          | 13 |
| 제 5 조 경과규정 .....        | 13 |
| 제 1 항 초기 법인회.....       | 13 |
| 제 2 항 직분자 정년.....       | 14 |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교회는 에덴장로교회(“Eden Presbyterian Church”)라 칭하고, 사역명칭(DBA)은 에덴개혁장로교회(“Eden Reformed Presbyterian Church”)로 한다.

### 제 2조 목적

1. 이 교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신구약성경에 맡겨진 일들을 실행하고 특히 예배와 덕을 세우는 일과 전도에 힘쓰는 것이다.
2. 이 교회의 둘째 목적은 이 땅에서 종교개혁과 청교도 정신을 구현하여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 제 3조 표준

1. 이 교회의 첫째 표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정확 무오하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인 신구약 성경이다.
2. 이 교회의 둘째 표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 제 4조 실천 강령

이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인 설교와 교육으로 전하고, 신실히 성례를 베풀며, 또 교회의 권징을 성실하게 행한다.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하며 모든 교인들에게 유익한 계획과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 제 2장 교인

### 제 1조 교인의 구분

1. 등록교인: 세례를 받고 본 교회가 정한 교인서약을 한 자로서 당회의 등록 절차를 마친 자.
2. 미수찬교인: 등록교인의 자녀로 등록교인 부모 중 한명의 등록 신청을 당회가 허락한 자.

### 제 2조 등록교인의 자격

1. 본 교회의 공예배와 공적 모임에 3개월 이상 충실히 참석한 자

2. 등록을 위해 당회에서 정한 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자
3. 당회가 교인서약에서 고백할 신앙의 참 뜻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힘 닿는 데까지 확증한 자.
4. 본 교회가 정한 교인서약을 공개적으로 한 자.

### 제 3조 등록의 종료

1. 이명: 등록교인이 다른 교회로 출석하기를 원하면 당회는 그 사유를 알아보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하여 만류할 것이나 듣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지우고 당회록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2. 제명: 등록교인이 질병등 정당한 이유나 아무런 연락없이 반년이상 장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권징을 받고도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교인명부에서 지우고 당회록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3. 사망: 등록교인이 사망하면 그의 이름을 교인 명부에서 지우고 당회록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4. 기타: 미수찬 교인들은 등록교인 부모 중 한명과 함께 교인명부에서 이명, 또는 제명 될 수 있다.

### 제 4조 교인의 의무

등록교인과 미수찬교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모든 공적 예배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한다
2. 경건한 생활을 하여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3. 연보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한다
4. 복음 전파에 힘쓰며 주어진 은사를 통해 사역에 힘쓴다
5.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순종 한다

### 제 5조 교인의 권리

등록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2. 교회사역에 봉사할 수 있다.
3. 공동의회의 회원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3장 직분자와 각종 회

### 제 1조 당회

#### 제 1항 목적과 구성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당회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들로 최소 총 3 인으로 구성된다.

#### 제 2항 공동직무

당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며 최종의 결정 권한을 가진다. 당회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역에 대한 감독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예배, 성례, 교육, 선교에 관한 영적사역을 관장한다.
2. 교인들을 받고, 보내고, 권징한다.
3. 다른 조직들과 위원회들과 교인들의 활동을 감독한다.
4. 교회재산의 사용에 관한 최종의 권한을 갖는다.

#### 제 3항 장로의 개별직무

장로는 모든 사역에 공동의 책무를 가지고 서로 도와와 한다.

가르치는 장로(이하 담임목사)의 우선적 사역의 책무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교회를 진리의 터위에 굳게 세우는 일이다.

다스리는 장로의 우선적 사역의 책무는 교인들을 심방하고 권면함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이다.

#### 제 4항 선출과 임기

1. 담임목사:공동 회의에서 참가 인원 1/2 이상이 찬성하며 본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청빙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청빙 위원회가 추천한 남자 후보를 공동회의에서 참가인원 2/3 이상이 찬성하여 임명한다. 임기에 제한은 없으나 정년은 70 세이다.
2. 다스리는 장로: 2 년이상 봉사의 과정을 거친 무흠한 남자 등록교인으로서 다른 등록교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후

당회가 그의 내적 소명을 확인하며 일정의 훈련을 하고 심사하여 적정 인원을 최종 후보로 인증한다. 당회는 후보 인증과정에 가족들의 의견을 참조 한다. 당회가 인증한 최종 후보를 공동회의에서 참가 인원 2/3 이상이 찬성하여 임명한다. 임기에 제한은 없으나 정년은 70 세이다.

3. 담임목사나 다스리는 장로가 정년이 되기 전에 당회에 사임을 신청할 경우 당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한지 심사하여 허락할 경우 사임할 수 있다.

## 제 5항 임원 조직

당회의 의장(이하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으며 담임목사 유고시에는 선임 장로가 임시로 당회장이 된다. 서기는 원칙적으로 차선임 장로가 맡는다.

당회장은 당회를 대표하고 모든 당회 회의를 준비 또 주도하며 서기는 모든 기록과 관리를 총괄한다.

## 제 6항 회의

당회는 매 달 1 회 정기적으로 모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장이나 1/3 이상의 장로의 요청으로 모인다. 당회의 정족수는 2/3 이상이며 모든 결정은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 제 7항 각종 기록과 서류의 보관

당회는 회의록을 비롯하여 성례식의 기록과 제직회및 공동의회의 회의록과 교인명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된 수찬교인들과 그들의 미성년 자녀들의 교인 명부에는 생일, 세례식, 징계, 회복, 사망, 제명에 대하여 기록한다. 교인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회의 기록은 자신에 대한 기록외에는 당회원들의 동의없이 관람할 수 없다.

## 제 8항 담임 목사에 대한 의무

1. 교회는 담임 목사의 정년 퇴직을 대비하여 연금기금을 마련할 것이며 그 구체적 실행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담임 목사는 연 5년 시무 후 최고 3개월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그의 세부 사항은 당회가 담임목사와 함께 결정한다.

## 제 9항 보조사역자와 선교사

1. 당회는 담임목사의 사역을 돕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목사 또는 목회후보생을 둘 수 있다.
2. 당회는 선교사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선교사를 세울 수 있다.

## 제 2조 집사회

### 제 1항 목적과 구성

집사회는 교회를 대표하여 그리스도의 공훈을 증거하며 당회가 주로 영적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임직 받은 모든 안수집사들로구성된다.

### 제 2항 직무

집사회는 당회로 부터 교회행정을 위임을 받아, 모든 지체들의 모범이 되어 아래의 사역을 담당한다. 모든 일들은 전 회원이 협력하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 업무별 담당 사역부서를 둔다. 집사회는 다음 사역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구제사역을 총괄한다.
2. 예배, 성례, 교육, 선교의 행정사역을 지원한다.
3. 새로오는 성도들을 도우며 교인들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힘쓴다.
4. 이사회를 도와 교회의 사역부서의 재정을 집행한다.
5. 교회의 재산과 비품을 관리한다.

### 제 3항 선출과 임기

안수 집사는 1년이상 봉사의 과정을 거친 무흠한 남자 등록교인으로서 다른 등록교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그 후 당회가 그의 내적 소명을 확인하며 일정의 훈련을 하고 심사하여 적정 인원을 최종 후보로 인증한다. 당회는 후보 인증과정에 가족들의

의견을 참조 한다. 당회가 인증한 최종 후보를 공동회의에서 참가 인원 2/3 이상이 찬성하여 임명한다. 임기에 제한은 없으나 정년은 70 세이다.

안수 집사가 정년이 되기 전에 당회에 사임을 신청할 경우 당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한지 심사하여 허락할경우 사임할 수 있다.

#### **제 4항 임원 조직**

임원은 총무와 서기를 두며 매년 1 월 정기 집사회때, 또는 임원 임명을 위해 소집한 집사회때 참석인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 임명한다. 중임이 가능하며 최대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총무는 집사회를 대표하고 당회와 연락하며, 모든 집사회 회의를 준비 또 주도하며 서기는 모든 기록과 관리를 총괄한다.

#### **제 5항 회의**

집사회는 매월 1 회 정기적으로 모이며 필요시 총무 또는 회원 1/3 인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회의로 모일 수 있다. 집사회의 정족수는 2/3 이상이며 모든 결정은 참석인원의 1/2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 6항 각종 기록과 서류의 보관**

집사회는 회의록을 비롯하여 각 부서별 활동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며 정기 공동회의 전에 당회에 제출하여 점검 받도록 한다. 모든 집사회의 기록은 어느 교인이든 관람할 수 있으나 단 교인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3조 이사회**

#### **제 1항 목적과 구성**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교인 중 7 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 제 2항 직무

이사회는 에덴개혁장로교회에 주어진 세상의 모든 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인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신앙과 영적 부분은 당회에 지도와 감독, 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따른 책임과 의무, 권리가 있다.

1. 이사회는 세상의 법과 기관들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양식을 법인을 대표해 기록, 보관, 제출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결정과 행동을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이사회는 정기 법인회의에 예산 안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년도에 승인된 예산은 새 예산이 승인될 때 까지 유효하다. 예산안을 세울 때에는 집사회의 자료를 참조하며 당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사회는 합법적으로 소집된 법인회의 참석회원들의 과반 수의 결의로 주어지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사회는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회의 재산과 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감독과 관리를 한다.
4. 이사회는 본 교회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저당잡히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권리 이전하는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법인의 재산 권리에 변동을 주는 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집된 법인회의의 참석인 과반수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3항 선출과 임기

이사회는 당회가 정한 다스리는 장로 2명, 집사회에서 정한 집사 2명, 등록교인 3명으로 구성한다. 등록교인 3명은 법인 회의때 참석자 2/3 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이나 각회의 결정에 따라 중임이 가능하며 최대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사회에 공석이 생길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장로, 집사, 또는 등록교인을 바로 선출한다.

## 제 4항 임원 조직

회장과 서기는 다스리는 장로 중에서 재무는 집사중에서 선출한다. 첫번 이사회 모임에서 참석자 2/3 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임기는 1 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최대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임원이 공석이 되었을때는 다음 이사회에서 참석자 2/3 찬성으로 이사들 중 다음 범무회의까지 임시 임명할 수 있다.

1. 회장 (Chief Executive Officer)은 모든 이사회 모임의 인도를 진행하고 진행하며 이사회 모임의 모든 결정을 신속히 집행한다.
2. 서기(Secretary)는 모든 모임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법인의 증서들과 문서들을 보관한다. 그외에 회장을 임무 수행을 돕고 회장유고시에는 임시회장을 뽑을 때 까지 회장의 임무를 담당한다.
3. 재무(Chief Financial Officer)는 교회의 재산과 재무에 관하여 정확한 기록을 보유해야한다. 재무는 이사회가 모일 때에 법인의 현재 재정상황을 전월의 재정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사회 모임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범무회의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 제 5항 회의

이사회는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분기에 한 차례 모여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회는 회장이나 1/3 이상의 이사들에 의해 임시로 모일 수 있다. 이사회 모임의 정족수는 2/3 이상이며 모든 결정은 참석인원의 1/2 이상이 찬성해야 하나 만장일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 6항 각종 기록과 서류의 보관

이사회는 회의록을 비롯하여 법인의 증서들과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모든 이사회 모임의 기록은 어느 교인이든 관람할 수 있으나 단 교인들 개인정보 보호와 법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 제 4장 각종 회의와 모임

### 제 1조 일반 규칙

#### 제 1항 회의 전 공고

모든 공동회의, 제직회의, 또 법인회의는 모임 날짜 두 주일 전에 공고하거나 모임 날짜 10 일 전에 안내서한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회의는 모임 날짜 일 주일 전에 공고하거나 안내서한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공고와 안내 서한의 내용은 정해진 안건, 또 회의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제 2항 참관권

에덴개혁장로교회내의 모든 회의는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이나 발언권 없이 참관할 수 있다. 단 각 회의는 개인 정보나 법인 보호를 위해 참석인 1/2 이상 투표로 참관을 불허할 수 있다.

#### 제 3항 유효한 결정의 조건

1. 모든 회의는 다른 조건이 없는 한 참석인이 등록 회원 중 2/3 이상이 되어야 정족수를 채우며 참석인 중 1/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 된다. 단 회의규칙을 정하는 안건이나 임원 투표는 참석인 1/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 안건 투표 때 회의 장소에서 부재중인 회원은 투표할 수 없으며 기권표로 기록한다. 모든 기권표는 참석인의 수에서 제외하며 따로 기록한다. 만일 모든 기권표를 제외한 총 투표인의 수가 최소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안건은 무효로 처리한다.
3. 단 각 회의를 끝내는 안건은 최소 정족수와 상관 없이 모든 기권표를 제외한 투표인의 1/2 이상이 찬성할때 그 회의가 폐회된다.

#### 제 4항 각 회의 서기의 의무

각 회의의 서기는 회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1. 회의 소집한 공고 또는 안내서한
2. 회의 참여한 회인 명단
3. 회의를 참관하는 비회인 명단
4. 투표에 붙여진 안건과 그에 대한 투표수와 결과

## 제 2조 공동 회의

### 제 1항 공동회원의 자격

본 교회의 등록교인은 모두 공동회원이며 각 1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제 2항 정기회의

정기 공동회의는 보통 1 월이나 2 월 중에 모이되 정확한 시간은 당회가 정한다. 정기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직회에서 전년도 사업들을 보고한다.
2. 필요한 경우 다스리는 장로와 집사를 선출한다.
3. 기타 당회가 승인한 안건을 다룬다.

### 제 3항 임시회의

당회나 공동회의원들 1/4 이상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특별한 안건들을 가지고 소집된 공동회의에서 그 안건외에 다른 사무를 다룰 수 없다.

### 제 4항 임원 조직

당회장이 공동회의의 의장이 되며 당회서기가 공동회의의 서기가 된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회가 대행할 자를 정한다.

## 제 3조 제직 회의

당회와 집사회의 직분자들은 제직회의로 함께 모여 각회의 사역들의 진행을 돕거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매 분기에 1 회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또는 필요에 따라 당회나 집사회의 요청하면 임시로 모일 수 있다. 회의 의장은 당회장이며 기록은 당회의 서기이다.

## 제 4조 법인 회의

### 제 1항 법인회원 자격

법인회의 당일로 만 18 세 이상인 본 교회의 등록 교인은 모두 법인회의의 회원이며 각 1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제 2항 정기회의

정기 법인 회의는 정기 공동회의와 같은 날에 열린다. 정기 법인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가 제출한 전년도의 결산서와 새년도의 예산서를 승인한다.
2. 교회의 재정과 재산, 운영등에 관한 당면한 일들을 안건으로 한다,
3. 3 명의 이사를 선출, 또는 재임 한다.

### 제 3항 임시회의

필요한 경우 주법에 따라 법인회원의 5% 이상의 요청하면 특별 법인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특별한 안건들을 가지고 소집된 법인회의에서 그 안건외에 다른 사무를 다룰 수 없다.

### 제 4항 임원 조직

법인의 임원들은 이사회의 임원들과 같다.

### 제 5항 정족수

주법에 의해 정족수는 투표권이 있는 자들의 1/3 이다. 정족수가 찬 법인회의에서 회의중에 퇴회한 사람들로 정족수 이하가 되어도 폐회 전까지 계속하여 사무를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족수의 과반수로 안건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5장 위원회 및 그룹의 조직

### 제 1조 위원회

당회나 집사회나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세울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그 구성 목적에 따라 활동할 것이며 그들의 결론 또는 제안들을 그 위원회를 세운 회에 보고할 것이다.

### 제 2조 그룹/클럽/친목회

그룹, 클럽, 친목회와 같은 조직은 모두 당회의 승인과 지도를 받아야 하며, 등록교인들만이 그 모임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제 6장 권징

### 제 1조 권징의 본질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 제 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자함이다.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 제 3조 권징의 과정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여 그가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 제 1항 절차

모든 권징은 마태복음 18:15-17 에 제시된 경로를 따라 신중하게 진행한다.

#### 제 2항 권면

당회는 먼저 죄를 지은 자를 불러 범죄의 행위를 알리고 회개하도록 권면할 것이다.

## 제 4조 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1)경고, (2)견책, (3)정직, (4)면직, (5)수찬정지, (6)제명이며, 제명은 중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과한다.

## 제 5조 해벌

당회는 징계를 받은 자의 회개 여부에 따라 해벌을 정한다.

# 제 7장 부칙

## 제 1조 회계년도와 사역년도

에덴장로교회의 회계년도와 사역년도는 매년 3 월 첫째 날에 시작하여 다음해 2 월 마지막 날에 끝난다.

## 제 2조 준용

본 정관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의 헌법(KAPC)을 참고하여 당회가 정한다.

## 제 3조 수정

본 정관은 2 주 전에 통보되어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회의 또는 법인회의에서 참석인 2/3 이상의 의결로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제 4조 발효

본 정관은 공동의회의 통과 즉시 발효한다.

## 제 5조 경과규정

### 제 1항 이사회와 법인회

본 정관이 발효된 첫 회계년도의 이사회는 정관 발효 30 일 이내에 당회와 집사회가 선출한 각 2 명의 이사를 등록회인 전원으로 하여 구성하며 이 4 명의 이사 중 임원을 선출하고 임시 법인회의를 정관 발효 60 일 이내에 소집하는 외의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첫 임시 법인회의는 3 장 3 조 3 항에 따라 등록교인 중 3 명을 이사로 선출하는 것 외의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 제 2항 직분자와 임원직

1. 본 정관 발효일에 각 회의, 모임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는 임원들은 이 정관의 규칙에 따라 다른 이가 선출될때까지 그 임원직을 계속 맡는다.
2. 본 정관 발효일에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나 집사중 정년을 넘은 자는 3장 1조 4항과 3장 2조 3항에서 제외되며 그의 정년은 당회가 결정한다.

정관 제정일     2019년 1월 27일

[LEFT INTENTIONALLY BLANK]